

고령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
일부개정조례안
(김명국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발의연월일 : 2021. 12. 22.

발 의 자 : 성원환·김명국·이달호·

김선욱·배호임·배철헌의원

1. 제안이유

「지방자치법(법률 제17893호, 2021. 1. 12. 전부개정)」 전부개정에 따라 임시회 소집 정족수를 추가하여 지방의회 운영의 자율화를 강화하기 위함.

2. 주요내용

가.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임시회를 소집할 수 있는 규정 추가 (안 제3조)

3. 관계법령

「지방자치법」

고령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고령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「지방자치법」 제44조·제45조·제47조”를 “「지방자치법」 제53조·제54조·제56조”로 한다.

제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- ② 의장은 군수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임시회를 소집하여야 한다. 이 때 임시회의 회기는 10일의 범위에서 본회의 의결로 이를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지방자치법」 제44조·제45조·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령군의회(이하 “의회” 라 한다)의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 <p>제3조(회기) ① (생략)</p> <p>② <u>임시회의 회기는 15일 이내의 범위에서 본회의 의결로 이를 정한다.</u></p>	<p>제1조(목적) ----- 「지방자치법」 제53조·제54조·제56조 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제3조(회기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<u>의장은 군수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임시회를 소집하여야 한다. 이 때 임시회의 회기는 10일의 범위에서 본회의 의결로 이를 정한다.</u></p>